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5
----------	------

2020년 9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7.13. 서윤기 의원 등 43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0.7.14.

다. 상정 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9월 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매결연’ 을 ‘상호결연’ 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 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음.
- 인권 기본 조례 제8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2016.9.29.개정), 이는 서울시민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시는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 기본 조례와 관련 기본·시행계획을 근거로 서울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¹⁾ 그 결과를 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의결 받아 서울시 자치 법규에 반영하고 있음(2020.4.6. 기준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
- 본 개정안은 위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의결 결과를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

- 2019년 7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수행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용역의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가 2018년에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1) 연구용역명: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기간: 2019.7.2.~11.22., 수행기관: (재) 서울연구원

참고해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서울시 자치법규에 적용해 개선할 부분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음.

- 해당 인권영향평가는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고, 평가 결과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 대한 보완·개정이 필요함을 도출했음.
- 현행 조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부분은 시의회와 외국 도시가 결연을 맺는 것을 ‘자매결연’으로 표현한 부분임.
- ‘자매결연’은 이미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²⁾를 통해 해당 용어는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므로 이를 ‘상호결연’이라는 객관적 용어로 순화할 것을 권고 받은 용어임.
- 이후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견수렴과정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는 ‘자매도시’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보고서는 우열적 관계를 반영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³⁾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법제연구원은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했고 상위법상에도 ‘자매결연’ 자체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없는바,⁴⁾ 현행 조례상의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변경하는 것은 차별적 용어를 객관적 용어로 순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2) 강현철 외(2015),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 신인철 외(2019),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서울특별시, p.41.

4) 위의 자료, p.41.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자매결연’ 용어를 ‘상호결연’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95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

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회의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